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행정처분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작 성 자	이름	유지연
	담당부서 (과)	감염병정책총괄과		직급	보건주사보
	국장	박혜경		연락처	043-719-7136
	과장	최종희		이메일	yiy15@korea.kr

2020. 11. 03.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박혜경
박혜경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행정처분 기준		
	2.규제조문	제42조제1항 별표 10		
	3.위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11.10 ~ 2020.11.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491호 2020. 9. 29. 공포, 2020. 12. 30. 시행 예정) 으로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9.규제목표	방역지침 준수가 불가하거나 준수할 의지가 없는 시설의 경우 현행의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기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신 설>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10과 같다.
<신 설>	[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가장 중한 행정처분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1에 따라 처분한다. 3.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 위반행

현 행	개 정 안
	<u>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u> <u>6. 최근 2년 동안 3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운영정지처분을 하고, 3개월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처분을 한다.</u> <u>7.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관리자·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u> <u>8. 운영중단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 또는 가중처분하려는 경우 그 운영중단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u> <u>9.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u>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II.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근거 법령</th><th colspan="3">행정처분</th></tr><tr><th>1차</th><th>2차</th><th>3차</th></tr><tr><td>1.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td><td rowspan="4">법 제49조제3항</td><td rowspan="2">경고</td><td>운영</td><td>운영</td></tr><tr><td>가.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td><td>중단</td><td>중단</td></tr><tr><td>나.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이용자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td><td>경고</td><td>운영</td><td>운영</td></tr><tr><td></td><td>중단</td><td>중단</td></tr></table>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	경고	운영	운영	가.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중단	중단	나.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이용자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운영		중단	중단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	경고	운영	운영																				
가.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중단	중단																				
나.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이용자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운영																				
		중단	중단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이나 장소에 대하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 등의 경우 과태료만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서는 운영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정지 행정처분 기준
	내용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부터 운영정지
규제대안2	대안명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정지 행정처분 기준
	내용	1차 위반부터 운영정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경고를 통해 방역지침 준수 유도	○ 1차 위반 시 경고로 인해 즉각적 제재조치 불가
규제대안2	○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정지를 통해 실효성 확보	○ 강화된 제재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 및 국민들의 반발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입법예고 예정	

3. 규제목표

- 방역지침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준수할 의지가 없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역지침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려는 것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규정 신설에 따라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에 따르도록 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
규칙 별표2에 규정하고 있음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 반	3차위 반	4차위 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 업을 계속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1)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그 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 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 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6호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한 때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방역지침준수 명령 1차 위반 시 경고를 통해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유도 가능,
- 현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지침 위반시 제재강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고,
-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정지 등에 대한 법률 개정 공포(9.29.)

2. 향후 평가계획

- '21년 : 운영정지 등 행정명령 준수율 확인

3. 종합결론

- 방역지침 준수가 불가하거나 준수할 의지가 없는 시설의 경우 현행의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염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 필요